

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

의안번호	86
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09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의결주문

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대상자에 대한 201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함을 의결 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바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임.

3. 주요내용

■ 대상자 인적사항 및 공적개요 (총 1명)

(1) 김광식(46세, 남) - 前 평창경찰서장 (시행규칙 제2조 5호 요건 해당자)

-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, 안전하고 깨끗한 『clean 평창』을 만드는데 기여.

연번	추천 대상자	추천 사유
1	성명 : 김광식(46세, 남) 직위 : 前 평창경찰서장 주소 : 경기도 시흥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하여 4대약 근절 등 범죄 예방활동에 힘써 안전하고 깨끗한 『clean 평창』을 만들었으며,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등 대통령·국제행사 경비 및 교통 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기여한 공이 큼.■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 실시(주차장 개방 농산물 건조, 민원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, 찾아가는 치안 간담회 실시로 주민의 다양한 치안요구 건의사항 처리 등)■ 4대 사회악(성폭력, 가정폭력, 학교폭력, 불량식품) 근절을 위한 활동 전개 ⇒ 4대 사회악 피해 감소■ 2014년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, 2015년 드림프로그램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국제행사에 교통관리 등 성공적인 행사 진행 지원■ 서민생활 보호 및 강력범죄 신속 검거로 2015년 강원도 절도 검거율 1위, 68건 130명 검거 ⇒ 전년대비 192% 상승

4. 참고사항 : 관련법규 1부.

□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(이하 "명예군민증" 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군민증 수여결정)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 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

제2조(수여대상자 요건)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(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)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.

1. 문화예술,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
2.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
3.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
4.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
5.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

제5조(명예군민에 대한 특전)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중한 예우를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<삭제 2011.7.15>
2.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및 사유시설의 지역주민과 동일한 대우
3.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시 초청
4.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
5.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 등